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8,537,844	18,556,135
일반회계	605,578,314	18,167,349
특별회계	12,959,530	388,786
기타특별회계	12,959,530	388,786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929,853	27,896
건축진흥특별회계	264,495	7,93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733,394	112,00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028,318	30,850
수질개선특별회계	56,073	1,68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1,883	18,956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48,103	4,443
상수도특별회계	6,167,411	185,02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99,31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간주예산)